

2019년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지원단체 및 사업]

-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인천광역시중구

기획감사실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사는 복지중구

要 約

□ 감사기간 : 2019. 4. 29 ~ 5. 31

□ 감사대상

○ **특정감사 3개 단체·사업**

※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감 사 반 : 감사팀장 外 4명

□ 감사범위

○ **2016. 1월 ~ 2018. 12월**

□ 감사결과

○ **총 평**

-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연간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 3개 단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관리 실태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3건, 주의 8건**, 재정상 조치로는 **370천원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음.

○ **세부 처분내역**

구 분 기 관 명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건)					신분상 (명/건)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	회수	환급	지급	
계	11	3	8	-	370/3	-	370/3	-	-	-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1	3	-	45/1	-	45/1	-	-	-
대한노인회중구지회	3	1	2	-	44/1	-	44/1	-	-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4	1	3	-	281/1	-	281/1	-	-	-

2019년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I

감사실시 개요

연간 보조금 5천만원 이상 3개 단체·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보조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 감사하여 보조금을 예산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 대상 및 기간 등

- 기 간 : 2019. 4. 29 ~ 5. 31
 - 대 상 : 3개 단체·사업
 - 감사범위 : 2016. 1월 ~ 2018. 12월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 ☞ 감사 대상별 세부내역

수감기관명	감사종류	감사기간	감사범위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정감사	2019. 4. 29 ~ 5. 3	2016.1 ~ 2018.12
대한노인회중구지회	특정감사	2019. 5. 13 ~ 5. 17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특정감사	2019. 5. 27 ~ 5. 31	

□ 중점 감사사항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타당성·투명성 여부
- 보조금 목적외 사용여부
-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및 적정 여부

1. 총 평

- 연간 보조금 5천만원 이상 3개 단체·사업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요소를 도출하고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및 소관 부서의 정산 검사 및 지도 감독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9. 4. 29 ~ 5. 31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 관련 조례 및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 정산 등의 절차를 대부분 이행하고 있으나, 보조금 교부신청 시 보조금 전용통장과 자부담금 예치금액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예산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음에도 사업부서에서는 검토 없이 정산검사를 종료하는 등 정산 검사가 보조금 집행금액 확인 및 집행잔액 반납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담당공무원은 법령 및 상위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보조사업자가 보다 더 성실히 보조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임.
- 이번 감사결과 1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3건, 주의 8건, 재정상 조치로는 370천원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부서장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및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나 지침 등에 대한 업무 연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보조금 교부 시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 향후 감사 실시 등을 사전 고지하여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임.

2. 처분내역 총괄

구 분 기 관 명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건)					신분상 (명/건)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	회수	환급	지급	
계	11	3	8	-	370/3	-	370/3	-	-	-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1	3	-	45/1	-	45/1	-	-	-
대한노인회중구지회	3	1	2	-	44/1	-	44/1	-	-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4	1	3	-	281/1	-	281/1	-	-	-

3. 지적 사항

지적사항 목록

연 번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원)
1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련 서류 작성·제출 소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의	
2	체크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의	
3	지방보조금 회계 처리 소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의	
4	워크숍 항공료 정산관리 소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정	회수 (45,000원)
5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련 서류 작성·제출 소홀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주의	
6	체크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주의	
7	보조금 집행 부적정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시정	회수 (43,630원)
8	착수예정일 연기 부적정	건 축 과		주의	
9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건 축 과		주의	
10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건 축 과		시정	회수 (281,250원)
11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미작성	건 축 과		주의	

수감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요약)

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련 서류 작성·제출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교부신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및 결재전용카드 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림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함. 또한, 인천광역시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실적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을 하면서 2016. 1월부터 2018. 12월까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체크카드 사용 절차 미준수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영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본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신용(체크)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신용(체크)카드 사용 후 매출표서 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2016. 1월부터 2018. 12월까지 매출표(영수증)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3. 지방보조금 회계 처리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운영수당 중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식비는 급량비 기준 단가(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하고,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 및 행사를 진행하면서 식비를 지출함에 있어 급량비 기준단가 8,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관련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워크숍 항공료 정산관리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45,000원)

2017년 3월 22일~23일 실시한 「2017년 민관사회복지워크숍」 진행 시 당초 41명으로 항공권을 계약(미션투어)하였으나, 출발 당일 ‘도원동협의체 이원도 위원’의 불참으로 40명만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므로 불참자 1명분에 대한 항공료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행사인 ****로부터 1인당 항공권 164,000원 중 발권수수료 및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24,000원을 환불받았어야 하나, 79,000원만 환불받아 차액분(45,000원)에 대한 정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5. 지방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련 서류 작성·제출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교부신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및 결제전용카드 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함. 또한, 인천광역시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실적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대한노인회중구지회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을 하면서 2016. 1월부터 2018. 12월까지 보조금 전용통장, 카드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경품구입비 지출 정산 부적정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영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본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신용(체크)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신용(체크)카드 사용 후 매출표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중구지회는 2016. 2월부터 2018. 5월까지 매월 복사기 임차료 지출 시 임대매출표(영수증)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7.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43,630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중구지회는 2018. 7월 보조사업 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보축하카드비용 43,630원을 기타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요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

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8. 착수예정일 연기 부적정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의 착수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건축과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현황에서와 같이 착수예정일을 1개월 이상 연기한 사실이 있음.

《착수예정일 연기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공동주택명	보조사업명	(기존)착수예정일	(연기)착수예정일
1	**아파트	**아파트 CCTV 고도화사업	2017. 5. 1	2017. 7. 12
2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2017. 6. 1	2017. 7. 3

9.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하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사항에 의하면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등 확인을 거쳐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축과는 아래 현황에서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해 할 자부담금의 예치금액 확인 및 보조금 통장과 보조사업자와의 일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지방보조금 통장(계좌) 별도 개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281,250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는,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과는 아래 현황에서와 같이 결정내역의 보조금 지원율(75%)과 다르게 보조금을 정산(76%)하여 281,250원의 보조금을 과집행 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등의 필요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현황》

(단위 : 원)

공동주택명	결정내역			정산내역			보조금 과집행	비고
	합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자부담		
**아파트	24,000,000	18,000,000	6,000,000	22,875,000	17,437,500	5,437,500	281,250	보조금 (75%)

11. 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미작성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VII.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의하면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청렴서약서 예시를 제시하여 벌칙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을 공지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과는 2016. 1월부터 2018. 12월까지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Ⅲ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해당 부서 통보
 - 시정·회수 등 : 60일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

붙임 수감 단체·부서별 처분요구서 각 1부. 끝.